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51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김현정 · 민병덕 · 황명선
남인순 · 양부남 · 박정현
김문수 · 김남근 · 송옥주
차지호 · 복기왕 · 이강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6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4장 제13절에 제5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6(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 ①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는 해당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장회사의 이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하 “기후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2. 수립된 기후전략의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수립된 기후전략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상장회사는 제2항에 따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상장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후전략의 수립이 결의된 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이사회는 기후전략의 이행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전략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u>제542조의16(기후전략에 관한 주</u> <u>주제안의 특례) ① 제361조에</u> <u>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u> <u>항에 대하여 제363조의2에 따</u> <u>른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u> <u>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u> <u>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는</u> <u>해당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u> <u>결의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상장회사의 이익과 「기후위</u> <u>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u> <u>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기</u> <u>본원칙에 부합하는 기후변화</u> <u>에 대한 대응 전략(이하 “기</u> <u>후전략”이라 한다)의 수립</u> <u>2. 수립된 기후전략의 이행의</u> <u>적정성에 대한 평가</u> <u>3. 수립된 기후전략의 변경</u> <u>②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에</u> <u>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결의</u>

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상장회사는 제2항에 따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상장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 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후전략의 수립이 결의된 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이사회는 기후전략의 이행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전략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